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6고정148 동물보호법위반, 과실치상
피 고 인	A (97****-2), 무직
검 사	박엘림(기소), 강다은(공판)
판 결 선 고	2026. 6. 1.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과실치상

개를 동반하고 외출하려는 사람은 개의 목줄을 착용하거나 입마개를 하여 개가 주변 사람 또는 동물을 물지 않도록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5. 2. 16. 16:25경 경남 양산시 물○읍 물○리 1**-2에 있는 '황○공원' 산책로에서, 피고인이 사육하는 래브라도 리트리버 개 1마리,

보더콜리 개 1마리에게 목줄이나 입마개 등 안전장치를 하지 않고 산책한 과실로, 위 개들이 인근에서 길을 걷고 있던 피해자 심○영(여, 29세)의 푸들 개에게 달려들고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발목을 접질러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발목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동물보호법위반

동물의 소유자는 등록대상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목줄 착용 등 사람 또는 동물에 대한 위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등록대상동물인 위 래브라도 리트리버, 보더콜리와 산책하면서 제1항과 같이 목줄이나 입마개 등의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피해자 심○영에게 제1항과 같은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심○영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참고인 이준○의 진술서 첨부), -진술서

1. -진단서(3주)

[피고인은 아직 목줄을 채우지 못한 상태에서 반려견들이 차량에서 뛰어 내리는 바람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인 본인에게는 이 사건 사고 발생에 과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실 내지 사정들, 즉 이 사건 발생 장소와 같은 공원을 이용함에 있어 반려견에게 목줄이나 입마개 등의 안전조치를 해야 함은 당연하고, 차

량으로 해당 장소까지 이동하였다면 위와 같은 안전조치를 모두 마친 뒤 차량 문을 열어 혹시 있을지 모를 안전사고에 대비할 필요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그와 같은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은 점,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의 반려견들이 차량에서 급박하게 뛰어내린 상황이 아니었고, 공터에 목줄이나 입마개 등을 하지 않은 채 방치된 상태였던 점, 피고인은 자신의 반려견들로부터 3미터 가량 떨어진 곳에서 피해자에게 '우리 강아지 물어요. 우리 강아지는 짖으면 문다'라고 말하는 등 자신의 반려견들이 다른 강아지를 물 수 있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피해자의 반려견에게 다가가는 자신의 반려견들을 제지하지 않았고 그 직후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던 점, 피고인은 2025. 6. 16.경에도 반려견에게 목줄을 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신고를 당한 적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된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6조 제1항(과실치상의 점), 동물보호법 제97조 제2항 제4호, 제16조 제2항 제1호(동물보호법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동물보호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의 주의의무의 위반 정도를 비롯한 이 사건의 발생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면 약식명령의 벌금액은 적정하다고 판단되고, 약식명령의 고지 후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현경 _____